

◎ 노인학대 ·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정보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유 형	내 용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가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 · 정서적 장애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⑧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 가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법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노인학대 · 폭력에 관한 예방지침

- 1) 유엔아이너싱홈은 노인 학대 · 폭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2) 유엔아이너싱홈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 · 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3) 유엔아이너싱홈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 폭력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 폭력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리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뜯,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0)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 · 폭력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11)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 폭력 위험 또는 학대 · 폭력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2)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 폭력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 ·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 · 폭력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4) 유엔아이나선호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폭력사태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6.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대응지침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폭력을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노인학대·폭력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폭력을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폭력을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3) 신고방법

-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 ② 노인학대에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⑤ 서신에 의한 접수
-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4)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제39의6 -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노인학대 · 폭력사례 업무 진행도

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3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8.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